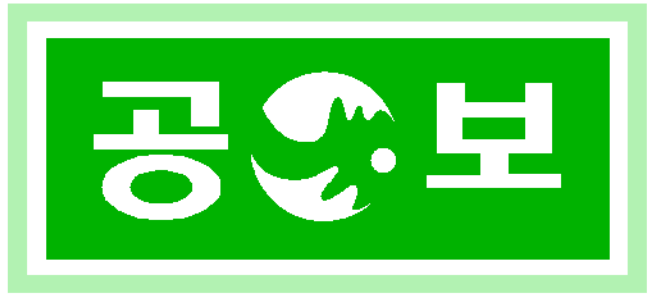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682 호 2011. 2. 28(월)

규 칙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354호[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35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5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복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윤종오 

2011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54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5억원 이상 10억원”을 “3억원 이상 5억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상반기 2월 말까지, 하반기 8월 10일까지”를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반기 3월 20일까지, 하반기 9월 20일까지”를 “1차 심사는 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2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를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

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쿠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부·용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2011. 1. 1)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부구 재정투·용자사업 심사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직정은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연·축제 등 행사상 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액을 단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제2조제항)
- 나.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제4조, 제5조)
- 다.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 3회로 확대(제6조)
- 라.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특이난 사업중 재심사 기준액을 10억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1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종합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 제부 “(징계양정의 기준)”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사위원회는 징지힘의지의”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으로, “징지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사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견”을 “징계의견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견(이하 “징계 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사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

권자는”으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계 의결서와”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심의회”를 “징계등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벌의무 위반사항과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징계기준(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징령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징령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으로 하여 같은 표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음주운전사

권 시디기준(제7조 권면)"으로 하여 같은 표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증가신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증가신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증가신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성과실린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중책
의 등속 이해(복수나 추징을 향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퇴근·면담금·복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
이나 징계부가금의 추징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집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하위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공포(2010. 08. 02)

2. 주요개정내용

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미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제2조제1항)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가금 기재(제7조제1항)

나.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 용어정리(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제7조 관련)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정의 등
-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기준 조문정비(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